

제 1 장 총 칙

정 관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 교육 및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갖춘 내.외국인의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현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현대중학교
2. 현대청운중학교
3. 현대고등학교
4. 현대청운고등학교
5. 현대공업고등학교
6. 울산현대국제외국인학교(영문표기는 “Ulsan Hyundai International School”라 한다.)

제 4 조 (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77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삭 제)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 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학교법인 현대학원

제 8 조 (경비의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며,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2 조의 2(예산·결산 공개)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 12 조의 3(예·결산 보고 및 공시)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3 절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삭제>

제 13 조 내지 제 21 조 (삭 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제 23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이사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2. 감사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삭제

제 24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4 조의 2(개방이사, 감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제직이사·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감사는 단수를 추천한다.

③삭제

제 24 조의 3(개방이사, 감사의 자격)

①개방이사 및 감사는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 2.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해당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 이었던 사람
-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 24 조의 4(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개방이사·개방감사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며,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5인과 법인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개방감사 추천 등 회의 개최 필요시 회의일 개최 7일전에 추천위원회에 회의소집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⑦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③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감사중 1인은 개방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 26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삭제

제 27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삭제

제 28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 조 (감사의 직무) 삭제

제 30 조 (삭제)

제 2 절 이 사 회

제 31 조 (삭제)

제 31 조의 2(이사회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3 조 (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4 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때에는 7일전까지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 (삭제)

제 3 절 (삭제)

제 35조의 2 내지 제 35조의 6 (삭제)

제 4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 35조의 7(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 ①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②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한다.

제 4 장 (삭 제)

제 36 조 내지 제 39조 (삭 제)

제 5 장 해 산

제 40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국고,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제 42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43 조 (임 용)

-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 ②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그 임기는 4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다.
- ③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기간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 5호 및 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④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교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들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정보통신 매체,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자로 제한 할 수 있다.
- ⑦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정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3 조의 2 (기간제 교원)

-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43 조의 3 (삭 제)

제 43 조의 4(전형결과의 공개)

-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4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 6.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 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제 45 조 (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 2. 제44조 제7의 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 7. 제44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제44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 11. 제44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 46 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 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7 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제 48 조 (직위해제 및 해임)

-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9 조 (보 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 50 조 (삭 제)

제 50 조의 2 (명예퇴직수당)

-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중, 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한다.

제 50 조의 3 (삭 제)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51 조 (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 및 공개전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3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4 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5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7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8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 징계위원회 (삭 제)

제 59 조 (삭 제)

제 60 조 (삭 제)

제 61 조 (삭 제)

제 62 조 (삭 제)

제 63 조 (삭 제)

제 63 조의 2 (삭 제)

제 63 조의 3 (삭 제)

제 64 조 (삭 제)

제 65 조 (삭 제)

제 66 조 (삭 제)

제 66 조의 2 (삭 제)

제 67 조 (삭 제)

제 68 조 (삭 제)

제 3 절 (삭 제)

제 69 조 내지 제 82조 (삭 제)

제 5 절 사 무 직 원

제 83 조 (자 격)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

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6의2에서 6의4에 해당하는자

6의 3. 삭제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직 및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84 조 (임 용)

①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근속승진, 대우사무직원선발, 승급, 전직, 직군전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③일반직원의 7급이하 하위직에게 근속 승진제를 적용한다.

④근속승진제는 학교 단위 기관별 정원기준에 의한 일반직원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 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근속승진대상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한다)동안 해당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근속승진기간이 변경될 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단, 근무실적이 부진하고 부적격자로 인정된 직원은 근속승진 임용에 제외된다.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월 이상

⑤근속 승진 임용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1일로 임용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⑥(사무직원대우선발제) 당해 직급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중 사학연금 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총 근속 경력과 당해 직급 경력이 있는 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사무직원으로 선발 할 수 있다. 이때, 대우사무직원선발 대상자는 승진최저소요연수를 경과해야 하며 대상 직급별 경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개정으로 대상 직급별 경력 요건이 변경될 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단, 근무실적이 부진하고 부적격자로 인정된 직원은 대우사무직원 선발에 제외된다.

1. 4급 대우 : 사무직원 총 근무경력이 16년 이상이고, 5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2. 5급 대우 : 사무직원 총 근무경력이 10년 6월 이상이고, 6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3. 6급 대우 : 사무직원 총 근무경력이 8년 6월 이상이고, 7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4. 7급 대우 : 사무직원 총 근무경력이 6년 6월 이상이고, 8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5. 8급 대우 : 현재 9급으로 당해 계급에서 4년 이상근무한 자

⑦대우사무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2의 규정에 준하여 대우 수당을 지급한다.

⑧대우사무직원 선발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달 초일에 임용하고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한다.

⑨제1항의 임용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⑩제1항의 임용 중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을 따른다.

제84조의 2(사무직원 명예퇴직 수당)

①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제 ①항에 의거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자가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수당산정 공식 및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의 3(직군의 전환)

①일반직원의 관리운영, 기술 직군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교육행정 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교육행정 직군으로 전환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교육행정 직군으로 전환 시 당해 직급으로 임용하며 근무연수는 임용 전 직급에서 근속한 연수로 본다.

④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군의 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제 84 조의 4 (퇴직준비교육)

①지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시행계획에 준하여 일반직원도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한다.

②적용대상은 일반직원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자(정년퇴직일전 3개월간 실시)

- 1. 상반기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 2. 하반기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③세부사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의한다.

제 85 조 (복 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 86 조 (보 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 87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8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88조의 2(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9 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과장(행정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 한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삭 제)

제 90 조 내지 제 96조 (삭 제)

제 3 절 (삭 제)

제 97 조 내지 제 100조 (삭 제)

제 4 절 (삭 제)

제 101조 내지 제 104조 (삭 제)

제 5 절 고 등 학 교

제 105조 (교장 등)

-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 106 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절 중 학 교

제 107 조 (교장 등)

-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제 108 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절 (삭 제)

제 109 조 내지 제 110 조 (삭 제)

제 8 절 (삭 제)

제 111 조 (삭 제)

제 9 절 (삭 제)

제 112 조 (삭 제)

제 10 절 (삭 제)

제 113 조 (삭 제)

제 11 절 정 원

제 114 조 (정 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과 학교별 일반직 배치기준표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 115 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16 조 (위원의 선출 등)

-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117 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18 조 (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해당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 ③지역위원은 울산광역시내에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울산광역시 내에서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19 조 (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0 조 (위원의 자격상실)

-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졸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③제1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 121 조 (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탁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삭제

제 121조의 2(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

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전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관심 있는 자로 선출하며, 소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에 학부모,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조리를 하지 않는 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21조의3(회의록 작성과 공개)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전,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 121조의4(의견수렴 등)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22 조 (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시간을 정하여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심의안건을 덧붙여 운영위원회에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전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운영 경비 등

제 123 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4 조 (지원·지도 등) 법인 이사장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5 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삭 제)

제 1 절 (삭 제)

제 126 조 내지 제 127 조 (삭 제)

제 2 절 (삭 제)

제 128 조 내지 제 130 조 (삭 제)

제 3 절 (삭 제)

제 131 조 내지 제 137 조 (삭 제)

제 10 장 보 칙

제 138 조 (공 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지 또는 울산광역시 지방지에 공고한다.

제 1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140 조 (설립당초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이 사 장	정 주 영	1915. 11. 15
이 사	김 영 주	1920. 12. 12
"	정 태 구	1931. 6. 29
"	심 현 영	1939. 11. 23
"	이 양 섭	1936. 11. 3
"	오 창 석	1933. 6. 30
"	신 현 창	1932. 5. 21
감 사	임 의 택	1934. 8. 7
"	이 은 방	1938. 7. 25

제 141 조 (외국인학교)

- ① 외국인학교에 교장 1인과 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되, 세부 직제와 교직원 인사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사립학교법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④(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의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 부터 기산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단, 제3조(설치학교)2호 및 4호의 학교명칭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5항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의 교명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

부터 이월 이내 보충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제23조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 종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5호 현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6호 울산현대국제외국인학교의 교명은 학교명칭변경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교육행정직 계	4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관리운영직 계	2명
9급	2명
기술직 계	2명
9급	2명

일반직원 직급별 배치 기준표

학교명	교육행정 직군	관리운영 직군	기술 직군	비고
현 대 중학교	6급 1 7급 1 8급 1 9급 1	9급 2	9급 3	
현대청운 중 학교	6급 1 7급 1 8급 1 9급 1	9급 2	9급 3	
현 대 고등학교	4급 또는 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	9급 2	9급 3	
현대청운 고등학교	4급 또는 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	9급 2	9급 5	
현대공업 고등학교	4급 또는 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	9급 4	9급 4	

재 산 목 록 (삭 제)